

성평등 정책과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문제점

길원평

(부산대학교 자연대학 물리학과 교수)

요약

얼마 전에 성평등 정책을 포함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에, 성평등을 받아들이는 서구에서 발생하였던 폐해와 문제점들이 한국에서도 생기고, 동성애와 동성결혼도 자연스럽게 합법화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관계자들은 성평등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면서 윤리도덕을 파괴시키고 여성들과 아동들의 성폭력 위험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국가 세금을 투자하면서 시행하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성평등의 정의와 문제점을 기술하고, 성평등이 성정체성 등의 제3의 성을 포함하는 개념을 변하고 있음을 보였다. 법무부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같다, 제1차,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혼용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양성평등'과 함께 '성평등'이 병기되고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있다. 본 논문은 법무부가 주장하였던 논리들에 대한 반론들을 기술하였다. 성평등 정책이 여성들의 성폭력 위험을 증가시키면서도 불구하고, 진보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성평등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주디스 버틀러와 같은 여성 동성애자들에 의해 개발된 논리를 진보 여성단체에 의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다고 본다. 하루 빨리 이러한 미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대다수 여성들을 위한 길임을 깨닫는 여성 학자들의 분별력이 있는 논문과 저서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성평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서, 남녀 차별을 없애면서 여성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들이 수립되는데 도움을 주려고 작성되었다.

1. 서론

지난 8월 7일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우려가 있는 독소조항들을 삭제하라는 수많은 국민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독소조항이 전혀 삭제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강화되어 통과하였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앞부분에 “국제인권규범은 성적지향(동성애), 성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기술함으로써,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가 전 세계의 추세라고 전제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30 군데에서 '성평등'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성평등 의미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받아드릴 수 없는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의 개념이 들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성(젠더)과 성평등의 의미를 고찰한 후에, 서구에서 나타나는 성평등의 폐해들을 소개하겠다. 또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에, 법무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성평등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주장하였던 논리들에 대한 반론을 기술하였다. 본 논문은 성평등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바로잡아서 올바른 정책들이 수립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한다.

2. 사회적 성(젠더)의 정의

젠더(gender)는 존 머니에 의해서 1955년에 생물학적 성(sex)과는 구별된 용어로 도입되었다.

젠더는 성(sex)을 포함하거나 대체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세계 보건기구(WHO)에 있는 자료에 따르면, 성(sex)은 남성과 여성을 정의하는 생물학적 특성을 지칭하고,¹⁾ 젠더(gender)는 남성과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구성된 특성, 즉 표준(norm), 역할(role), 관계(relationship) 등을 지칭한다.²⁾ 젠더가 원래 남녀의 사회적 역할, 심리적 특성 등을 지칭하다가, 최근에 학자들 에 의해 젠더는 모호성(gender ambiguity)과 유동성(gender fluidity)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 다(Bornstein, 1995: 51-52). 특히, 주디스 버틀러는 젠더의 논의가 섹스 이원론과 이성애를 강 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섹스 이원론이 젠더 이원론으로 치환되었기에, 젠더 이원론의 해체 가 기존의 여성상에서 벗어난 여성의 자유를 신장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보았다(이진옥·권수현, 2018: 5).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젠더는 생물학적인 성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즉, 생물학적 성은 남성과 여성의 두 종류의 성 만 존재하지만, 사회적 성 즉 젠더에는 수십 가지의 다양한 성 정체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화 하고 있다. 예로서, 페이스북이 영국 사용자들에게 아래 표에 있는 71개의 성 옵션(gender option)을 제공하고 있다(<http://www.telegraph.co.uk/~>, 2018).

표1. 페이스북의 71개 성 옵션

<p><영국 사용자를 위한 21가지 새로운 옵션></p> <p>1. Asexual, 2. Female to male trans man, 3. Female to male transgender man, 4. Female to male transsexual man, 5. F2M, 6. Gender neutral, 7. Hermaphrodite, 8. Intersex man, 9. Intersex person, 10. Intersex woman, 11. Male to female trans woman, 12. Male to female transgender woman, 13. Male to female transsexual woman, 14. Man, 15. M2F, 16. Polygender, 17. T* man, 18. T* woman, 19. Two* person, 20. Two-spirit person, 21. Woman</p> <p><50가지 이전 성별 옵션의 목록></p> <p>1. Agender, 2. Androgyne, 3. Androgynes, 4. Androgynous, 5. Bigender, 6. Cis 7. Cis Female, 8. Cis Male, 9. Cis Man, 10. Cis Woman, 11. Cisgender, 12. Cisgender Female, 13. Cisgender Male, 14. Cisgender Man, 15. Cisgender Woman, 16. Female to Male, 17. FTM, 18. Gender Fluid 19. Gender Nonconforming, 20. Gender Questioning, 21. Gender Variant 22. Genderqueer, 23. Intersex, 24. Male to Female, 25. MTF, 26. Neither 27. Neutrois, 28. Non-binary, 29. Other, 30. Pangender, 31. Trans 32. Trans Female, 33. Trans Male, 34. Trans Man, 35. Trans Person 36. Trans*Female, 37. Trans*Male, 38. Trans*Man, 39. Trans*Person 40. Trans*Woman, 41. Transexual, 42. Transexual Female, 43. Transexual Male 44. Transexual Man, 45. Transexual Person, 46. Transexual Woman 47. Transgender Female, 48. Transgender Person, 49. Transmasculine 50. Two-spirit</p>

표1에 있는 용어들에 대한 의미를 아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웹사이트 news.au와 젠더 센터 가 만든 용어들의 정의를 아래 표2에 인용하였다(Ridley, 2016).

표2. news.au와 젠더 센터가 만든 젠더 정체성에 대한 설명

-
- 1) "Sex refers to the biological characteristics that define humans as female or male."
http://www.who.int/reproductivehealth/topics/gender_rights/sexual_health/en/
- 2) "Gender refers to the socially constructed characteristics of women and men - such as norms, roles and relationships of and between groups of women and men."
<http://www.who.int/gender-equity-rights/understanding/gender-definition/en/>

1. 여성: 여성으로 태어났고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정의하는 사람
2. 남성: 남성으로 태어났고 스스로를 남성이라고 정의하는 사람
3. 트랜스젠더 남성: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스스로를 남성이라고 정의하는 사람. 일부 트랜스는 성전환 수술을 받기도 한다. 수술을 받지 않으나 다른 젠더라 정의하는 사람들도 있다.
4. 트랜스젠더 여성: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정의하는 사람. 일부 트랜스는 성전환 수술을 받기도 한다. 수술을 받지 않으나 다른 젠더라 정의하는 사람들도 있다.
5. 트랜스(Trans Person): 트랜스섹슈얼 혹은 트랜스젠더를 뜻한다. 트랜스섹슈얼은 감정적, 심리적으로 자신이 다른 성에 속한다고 느끼는 사람이다.
6. 여성에서 남성(Female to Male): FTM으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트랜스섹슈얼 혹은 트랜스젠더 남성을 뜻한다.
7. 남성에서 여성(Male to Female): MTF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트랜스섹슈얼 혹은 트랜스젠더 여성을 뜻한다.
8. 트랜스섹슈얼: 감정적, 심리적으로 자신이 다른 성이라고 느끼는 사람이다. 트랜스섹슈얼은 보통 옷, 호르몬 치료 등을 통해 한 성에서 다른 성으로 옮겨간다.
9. 시스젠더(Cisgender): 자신의 성이 타고난 성과 같다고 정의하는 사람. 예를 들어 여성으로 태어나서 스스로를 여성으로 정의하는 사람.
10. 비관행적 젠더(Gender Non-Conforming): 자신을 남성이나 여성으로 정의하지 않는 사람.
11. 넌 젠더(None Gender): 스스로를 그 어떤 젠더로도 정의하지 않는 사람.
12. 넌 바이너리(Non-Binary): 자신을 전적으로 여성 혹은 남성 젠더라고 정의하지 않는 사람. 여성과 남성의 스펙트럼 사이 어디쯤으로 자신을 정의할 수 있다.
13. 뉴트로이스(Neutrois): 중성 혹은 무성으로 간주되는 넌 바이너리 젠더 정체성.
14. 젠더플루이드(Genderfluid): 전적으로 여성이나 남성으로 정의하지 않는 사람.
15. 젠더퀴어(Genderqueer): 오직 남성 혹은 여성으로만 스스로를 정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아우르는 말.
16. 데미젠더(Demigender): (데미는 절반을 뜻한다) 특정 젠더와 부분적 연관이 있는 넌 바이너리 젠더 정체성을 아우르는 말.
17. 에이젠더(Agender): 단어의 원래 뜻은 '젠더가 없다'는 뜻이다. 스스로를 어떤 젠더로도 정의하지 않는 사람이다.
18. 인터젠더(Intergender):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성 사이의 젠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다. 두 가지가 섞여 있을 수도 있다.
19. 인터섹스(Intersex): 남성기와 여성기를 둘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예를 들어 겉 보기에는 여성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내부 장기는 남성에 가까울 수 있다. 예전에는 hermaphrodite라는 말도 썼지만, 지금은 이 말은 무례하고 낡은 것으로 간주된다.
20. 팡젠더(Pangender): 한 가지 이상의 젠더를 가졌다고 정의하는 사람.
21. 폴리젠더(Poligender): '많은 젠더'라는 뜻. 한 가지 이상의 젠더를 가졌다고 정의하는 사람.
22. 옴니젠더(Omnigender): '모든 젠더'라는 뜻. 한 가지 이상의 젠더를 가졌다고 정의하는 사람.
23. 바이젠더(Bigender): '두 젠더'라는 뜻. 남성과 여성 두 가지 다로 정의하는 사람. 일부 바이젠더는 서로 다른 남성과 여성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다.
24. 앤드로자인(Androgyne): 남성적인 동시에 여성적인 사람.
25. 앤드로지니(Androgyny): 남성적 특징과 여성적 특징의 혼합. 젠더 정체성, 성 정체성, 패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26. 제 3의 젠더(Third Gender): 스스로를 남성으로도 여성으로도 정의하지 않는 사람. 일부 문화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제 3의 젠더로 불렀다. 예를 들어 사모아에서 가족에 아들이 딸보다 많고 집안일을 도울 여성이 필요할 경우 아들을 파파피네로 키운다.
27. 트라이젠더(Trigender): '세 개의 젠더'라는 뜻이다. 남성, 여성, 제 3의 젠더를 오가

는 사람이다.

3. 성평등(gender equality)의 의미

성(gender, 젠더)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을 의미하기에, 성평등(gender equality)은 위에서 언급하는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한다. 성평등이 다양한 성 정체성을 포괄하는 개념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소개하겠다. 첫째, 여성가족부 요청에 의해 2016년에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만든 “성평등 관련 해외입법동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제분석”이 있다. 위의 한국법제연구원 자료의 10페이지에 “성평등권을 보호하는 국제규범이 해석론으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사안에도 적용이 가능한 현 시점”과 “성평등권의 보호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가 포함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 즉, 이러한 문구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성평등’이란 의미 안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자료의 11페이지를 보면, 영국의 경우에 2000년대 이후부터 성평등에 관한 인식 변화가 시작되어 남녀평등의 문제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 및 평등’ 문제로 변화되었다고 되어 있다. 즉, 영국에서 2000년 이후에 ‘성평등’이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평등이란 개념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자료에 의하면, 서구 일부 국가에서 성평등을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평등’ 또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위키백과에 따르면 “성평등은 두 성별(남성과 여성)에만 국한하지 않고 성소수자들에게도 뜻이 통한다는 점에서 양성평등의 개념과 구별된다.”고 하였다(<https://ko.wikipedia.org/~>, 2018).

2014년 2월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의 명칭을 ‘양성평등기본법’ 또는 ‘성평등기본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참석한 4명의 진술인 중 3명이 성평등기본법으로 바꾸는 것을 반대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14: 29-39). 숙대 법대 김용화 교수는 “현재 헌법을 위시한 하위법에서 제3의 성은 법적인 보호에서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다른 성불평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어떤 정책적 혼란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라고 말했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정숙 회장은 “현재는 법제명으로 양성평등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우리가 제3의 성이다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이에요”라고 말했고, 이대 젠더법학연구소 장명선 연구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을 논의하기에는 약간 무르익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평등으로 했을 때 약간의 혼란이 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라고 말했다. 반대 이유를 요약하면, 성평등에 제3의 성, 동성애 등을 포함하기에, 한국 사회에 혼란이 생긴다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성평등은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기에, 결과적으로 동성애, 동성결혼 등을 이성애, 이성결혼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대체되면, 연관된 성별, 혼인, 가족 등의 의미가 통째로 바뀌게 되어 매우 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서구에 나타난 성평등의 폐해를 간략히 소개하면, 2016년 미국 뉴욕시는 31개의 성을 공표하였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 25만달러(한화 약 2억7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Lifesite News, 2016). 영국, 미국 등에서는 여권 신청서와 공식문서에 엄마, 아빠 대신에 Parent 1, Parent 2를 사용할 수 있다(Christiantoday, 2015).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는 자녀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 양육권을 주정부가 빼앗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기독일보, 2017). 성평등이 이루어지면

남녀 성별 구분이 사라지고, 트랜스젠더가 반대 성의 화장실, 샤워장, 목욕탕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기에, 성폭력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팀에 출전할 수 있기에, 진짜 여성들이 불이익을 보고 불편함을 겪는다.

2017년 개헌 논의 과정 중에 헌법 36조의 '양성의 평등'을 '성평등' 또는 '평등'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러한 대체는 결국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였다. 2017년 8월말부터 영남, 호남 등 11개 권역별로 헌법에 대한 국민대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때에도 많은 국민들이 양성평등을 성평등 또는 평등으로 바꾸는 개헌을 반대하였으며, 그 결과 국회 개헌 논의에서는 양성평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거의 합의가 되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2017년 11월 16일에 발표한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은 1차와는 달리 대부분의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바뀌었다. 이때에도 많은 국민들이 항의해서 결국 여성가족부는 2017년 12월 20일에 대부분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때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소속된 28개 단체 회원들은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소수자들까지 포괄하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경향신문, 2017년 12월 20일자). 위 사실은 국민 대다수가 양성평등 대신에 성평등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진보 여성단체만이 성평등을 지지함을 보여준다.

진보 여성단체들이 성평등을 지지하는 논리를 살펴보면, 남녀 차별은 생물학적인 차이 자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별화되어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구조에 의해 노동과 가치, 책임과 의무가 다르게 배분됨으로써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았다(이진옥·권수현, 2018: 6). 즉, 남녀 차별은 생물학적 성, sex 자체에 의한 불평등이 아니고, 사회적인 인식의 결과인 gender의 불평등이라고 보았다. 이런 의미에서 남녀 차별을 없애려면, 사회적인 인식과 편견을 없애는 성평등이란 용어가 더 합당하다고 보았다. 반면에 양성평등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남녀이분법에 기초해 기계적이고 양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집중되어 있기에 옳지 않다고 본다(이진옥·권수현, 2018: 24). 또한 젠더는 교차성(intersectionality)을 담지한 개념으로, 젠더와 인종, 계급, 섹슈얼리티 등이 교차되면서 억압과 차별을 만들어내는데, 양성평등은 교차성의 문제를 간과한다고 보았다(이진옥·권수현, 2018: 6-7).

하지만, 양성평등도 당연히 생물학적 성, sex 자체에 의한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남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편견을 없애는 것이다. 성평등이 목표로 하는 남녀 차별을 없애는 것은 양성평등이란 개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사실 이제까지 양성평등에 기초한 법률과 정책들이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였다. 양성평등이 기계적 평등을 만든다고 반대를 하는데, 기계적 평등이 아닌 더 높은 차원의 평등을 양성평등으로는 할 수 없고 성평등으로만 가능하다는 논리도 합리적이지 않다. 또한 진보 여성단체의 요구 중에 남녀 사이의 기계적이고 양적인 균형에 대한 것들도 상당수 있다는 현실도 간과한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인종, 계급 등과의 교차성을 고려하는 성평등 개념은 양성평등에도 포함 가능하지만, 섹슈얼리티, 성적지향 등과의 교차성을 고려하는 성평등은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 양성평등에 포함될 수 없다.

요약을 하면, 남녀 차별을 없애려는 성평등 개념은 양성평등이란 개념에도 포함되지만, 성적지향, 성정체성을 포함하느냐는 문제에서는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나누어진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하는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면 오히려 여성들에게 성폭력 등의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여성보다 더 약자로 간주되는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예산 배정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여성에게 여러 가지로 불리한 결과를 낳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와 한국의 진보 여성단체는 성평등 이념을 실현하여 단순한 남녀 차별 시정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평등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실제적인 유익이 아니라 높은 가치를 위하여 여성들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교묘한 논리들은 사실상 주디스 버틀러와 같은 여성 동성애자들에 의해 개발되어 진보 여성단체 내로 확산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깨어있는 여성 학자들에 의해서 성평등 정책이 얼마나 여성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할 때에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성평등 정책의 교묘한 미혹에 의한 여성들의 고통을 하루 빨리 해결할 수 있다.

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있는 성평등 정책

2018년 8월 7일에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통과되었는데, 기본계획의 30군데에 ‘성평등’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8).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46페이지 “성평등 교육 확대 및 문화 확산” 제목 아래에 “공무원, 방송관계자 등에 대해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교육 실시” 소제목이 있고, 그 안에 “교육 매뉴얼 및 콘텐츠에 ‘성평등’ 내용을 포함하고, 부모 교육 담당자에 대해서도 성평등 교육 추진”, “성평등한 정부정책 수립을 위해 공무원 대상 성인 지 교육 시행”, “방송사업자 및 관계자, 방송심의 모니터 요원 등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이 있다. 또한 “성평등 교육 확대 및 문화 확산” 제목 아래에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 문화운동 전개” 소제목이 있고, 그 안에 ‘양성평등주간 등 주요 기념일·주간 여성안전 및 성평등 인식 확산 캠페인 전개’, ‘민간부문의 언론보도, 기업광고 등 성평등 의식 함양에 기여한 우수사례 시상’이 있다. 101페이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성평등 문화 조성” 제목 아래에, 102페이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소제목이 있고, 그 밑에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행동 및 언어습관 개선 가이드 등 제작 추진”, “성평등 콘텐츠 제작 및 성평등 교육 실시”가 있다.

299페이지 “인식 개선” 큰 제목 밑에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이란 제목이 있고, 그 밑에 “성평등 문화 확산 프로그램 제작 지원”, “폭력예방 및 성평등 관련 동영상, 웹툰, 카드뉴스 제작 지원”이 있다. 또한 “생활 속 성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과 성평등 실천문화 확산”이란 제목 아래에 “성평등 언어생활 캠페인”, “성평등 언어·표현 관련 카드뉴스 제작”이 있다. 또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성평등 담론 활성화”, “참여형 성평등 캠페인 추진, 양성평등정책 홍보 강화”가 있다. 이 기본계획에 의하면, 성평등에 대한 교육과 문화로 국민들을 세뇌시키려고 한다. 이제부터는 성평등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법무부가 했던 주장에 대한 반론을 기술하겠다.

4-1.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같다?

법무부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용어는 모두 영어 ‘gender equality’의 번역으로 혼용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법무부, 2018). 이것에 대한 반론은, 첫째 2018년 1월에 발간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62페이지의 개념 정의에 “양성평등(sex) = 남과 여라는 생물학적 차이(선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 성평등(gender) = 사회역사적(구조, 환경, 문화)으로 형성된 차이(후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라고 기술함으로써,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지 않고, 양성평등은 gender equality가 아니고 sex equality에 대응됨을 나타낸다(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2018).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동일하다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양성평등’ 삭제하고 ‘성평등’ 조항을 신설하려고 그토록 노력했을 이유가 없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의 평등을 명하므로, 남녀의 성을 근거로 해서 차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2001헌가9), “헌법 제11조 제1항은…‘성별’의 경우를 살펴보면,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

려운 생래적인 특징으로서”(2006헌마328)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6조의 ‘양성’과 제11조의 ‘성별’을 남녀의 생물학적인 성(sex)으로 해석한다. 셋째,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에 헌법 제36조의 ‘양성’을 ‘equality of sexes’로, 제11조의 ‘성별’을 ‘sex’로 번역하였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헌법에 있는 양성을 생물학적 성인 sex로 해석하고 있기에, 양성평등을 gender equality의 번역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넷째, 작년 12월에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계획에 있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니까,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소속된 28개 단체 회원들이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소수자까지 포괄하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이러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촉구로부터,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다르며, 성평등에는 양성평등과는 달리 성소수자들을 포괄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2015년 6월에 대전광역시가 성소수자 인권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항을 담은 ‘성평등 조례’를 제정하자, 여성가족부는 이 조항이 담고 있는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은 양성평등 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대전시는 2015년 9월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로 개정하였다. 이처럼, 여성단체, 동성애자 단체, 여러 자료 등에서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술한다. 결론적으로 gender equality를 양성평등으로 해석한 사례들이 혹 있다 하더라도, 법을 다루는 법무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양성평등을 gender equality의 번역이며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다.’라는 주장을 하면 안 된다.

4-2. 제1차,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혼용했다?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1번 등장하는데, 154페이지에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권고를 언급한 것이다. 제2차 기본계획에는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5번 등장하지만, 제1차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의 권고를 소개하는 것이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추진 및 성인지예산제도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 정부의 주요정책과 제도가 ‘양성평등’하게 추진되도록 분석평가 대상 확대”라고 기술하여 ‘성평등’을 ‘양성평등’하게 추진할 것을 명시한다. 따라서 제2차 기본계획에서도 제1차 때와 마찬가지로 ‘성평등’을 국가인권정책으로 추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제3차 기본계획에는 ‘성평등’ 용어가 30차례 등장하면서 유엔 권고를 단순히 소개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성평등’을 기본정책에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따라서 1차, 2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핑계로 대면 안 된다.

4-3.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양성평등’과 함께 ‘성평등’이 병기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제1조(목적)에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고, 제2조(기본이념)에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는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했다. 즉,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에 의하면, 양성평등기본법은 남녀의 2분법적 성별 구분을 전제로 입법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 제15조, 제19조 등에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나오지만, ‘성평등’이 제목에 사용된 것은 하나도 없고, 상당수가 ‘국가성평등지표’, ‘지역성평등지표’, ‘국가성평등지수’처럼 단어 안에 삽입된 형태이며, 용어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성평등 정도’, ‘성평등 수준’, ‘성평등 관점’, ‘성평등한’ 등으로 정책에 주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제14조, 제15조, 제19조 등에 나오는 ‘성평등’은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의 ‘제1절 양성평등정책 추진’이란 제목 아래에 들어있는 용어들입니다. 따라서 제14조, 제15조, 제19조에 나오는 ‘성평등’은 ‘양성평등’이라는 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나오기에, 이 경우의 성평등은

양성평등의 줄임말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나오는 성평등은 전혀 양성평등의 줄임말로 해석될 수 없을 정도로 제목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법무부도 성평등이 영어 gender equality의 번역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기본법에 성평등이란 용어가 나온다는 것을 핑계로 하면 안 된다.

5. 결론

2018년 8월 7일에 성평등을 명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에, 성평등을 받아들인 서구에서 발생하였던 폐해와 문제점들이 한국에서도 생기고, 동성애와 동성결혼도 자연스럽게 합법화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관계자들은 성평등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면서 윤리도덕을 파괴시키고 여성들과 아동들의 성폭력 위험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국가 세금을 투자하면서 시행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같다, 제1차,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혼용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양성평등'과 함께 '성평등'이 병기되고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성평등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법무부에서 핑계를 대는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였다. 성평등 정책이 여성들의 성폭력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줌에도 불구하고, 진보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성평등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주디스 버틀러와 같은 여성 동성애자들에 의해 개발된 논리를 진보 여성단체에 의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다고 본다. 하루 빨리 이러한 미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대다수 여성들을 위한 길임을 깨닫는 여성 학자들의 분별력이 있는 논문과 저서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서구의 잘못된 성평등 정책이 삭제되기 위해서도 학자들의 논문 발표 등에 의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경향신문. 2017년 12월 20일자. “'성평등'은 왜 '양성평등'이 됐을까... '이데올로기의 최전선' 된 젠더-성소수자 문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201710001&code=940100#csidx8be10dfbb315b49b7f80e0cfeb884d7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록 제322회 제2호, 29~39쪽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2018).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기독일보 (2017). 2017년 6월 8일자. “'커밍아웃'한 자녀, 부모가 반대하면 정부에서 양육권 박탈?”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91987/20170608/%EC%BB%A4%EB%B0%8D%EC%95%84%EC%9B%83-%ED%95%9C-%EC%9E%90%EB%85%80-%EB%B0%98%EB%8C%80%ED%95%98%EB%A9%B4-%EC%A0%95%EB%B6%80%EA%B0%80-%EC%96%91%EC%9C%A1%EA%B6%8C-%EB%B0%95%ED%83%88.htm> (검색일 2018. 10. 16.).

대한민국정부 (2018).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법무부 (2018). 2018년 5월 1일자 “서류 민원 회신” 공문.

이진옥·권수현. “양성평등의 계보화와 그 효과”, ‘패러다임의 전환 성/평/등’ 토론회(2018.2.7. 국

- 회 본청 223호) 자료집, 5면.
- Bornstein, Kate (1995). 성 노예 - 남자, 여자 그리고 나머지 우리, 빈티지, ISBN 0-679-75701-5 pp. 51-52.
- Ridley, Louise (2016). "호주의 이 설문조사는 33개 젠더 정체성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Huffpost 2016년 8월 3일자.
http://www.huffingtonpost.kr/2016/08/03/story_n_11311134.html (검색일 2018. 10. 16.).
- Christiantoday (2015). 2015년 8월 20일자. "Gay union offshoot: In Tennessee, mother and father now called 'Parent 1,' 'Parent 2'"
https://www.christiantoday.com/article/gay_union_offshoot_in_tennessee_mother_and_father_now_called_parent_1_parent_2/62390.htm (검색일 2018. 10. 16.).
http://hotline.or.kr/policy_proposals/25144 (검색일 2018. 10. 16.).
<https://ko.wikipedia.org/wiki/%EC%84%B1%ED%8F%89%EB%93%B1> (검색일 2018. 10. 16.).
-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ED%94%84%EB%9E%AD%ED%81%B4%EB%A6%B0-%EA%B7%B8%EB%A0%88%ED%95%A8-%EA%B8%B0%EB%8F%85%EA%B5%90-%EB%B2%A0%EC%9D%B4%EC%BB%A4%EB%A6%AC-%EB%A0%88%EC%A6%88%EB%B9%84%EC%96%B8-%EC%BB%A4%ED%94%8C-61366.html> (검색일 2018. 10. 16.).
- Lifesite News (2016). 2016년 5월 27일자. "29 new words for deviance you can be fined \$250,000 for not using in NYC".
<https://www.lifesitenews.com/news/29-new-words-for-deviance-you-can-be-fined-250000-for-not-using-in-nyc> (검색일 2018. 10. 16.).
- <http://www.telegraph.co.uk/technology/facebook/10930654/Facebooks-71-gender-option-s-come-to-UK-users.html> (검색일 2018. 10. 16.).